

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청년인턴운영내규

제정 2021. 8. 4.
개정 2021. 12. 2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청년인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청년인턴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이 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과 「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(정의) “청년인턴”이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라 청년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하여 일정기간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인력을 말한다.

제2장 청년인턴의 운용

제4조(운용방향) 청년인턴의 운용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, 근로기간, 근로시간, 임금등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“지방공기업 청년체험형 인턴 운영 지침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1. 단순 사무보조·잡무를 지양하고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
2. 상급직원과 청년인턴간의 멘토링 실시
3. 평가를 통한 우수인턴 선발 등 청년인턴 역량 검증
4.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

제5조(관리부서) ① 청년인턴의 종합적 인력 운용 제도 및 교육 훈련 등은

인사 관련부서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
② 청년인턴에 대한 직무교육, 멘토링, 평가, 복무관리 등은 청년인턴이 배치된 각 부서에서 실시한다.

제3장 인사

제6조(채용) ①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따라 공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자격요건) ① 청년인턴은 「청년고용특별촉진법」에 따른 청년(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)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학교 재학생·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
2. 공단 청년인턴 유경험자 및 현재 인턴근무 중인 자
3.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2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제8조(근로계약) ① 청년인턴의 계약기간은 공고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.

② 청년인턴으로 임용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9조(퇴직) 청년인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.

1. 청년인턴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퇴직일자
2. 사망한 때
3.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

제10조(계약해지)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고용 해제하여야 한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
2.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
3. 소속 부서장의 명령에 불복하였을 때
4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, 단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5.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
6.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을 하였거나 금전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
7. 예산 형편상 고용할 수 없을 때
8.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
9.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때

제11조(해지통지) 이사장은 청년인턴을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복무

제12조(성실의무) 청년인턴은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.

제13조(근로 및 휴게시간) ① 청년인턴의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되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 시업시간 09시, 종업시간 18시
2. 1일 근무시간 8시간(휴게시간 제외)
- ② 청년인턴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연장근무 등)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청년인턴에게 연장근무, 휴일근무,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근무명령은 업무 형평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한다.

제15조(휴일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.

1. 법정휴일(주휴일, 근로자의 날)
2. 관공서의 공휴일

3.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

②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내규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. 다만, 근로자의 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휴가) ① 1개월 개근 시 월 1회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

② 취업시험 등의 참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, 해당일 1일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지원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7조(공가) 청년인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. 다만, 해당 시간이 4시간미만 시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.

1. 예비군, 민방위, 기타 병무관계로 소집되거나 훈련에 참가할 때
2.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3. 공무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안성시에 소환될 때
4. 공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
5. 천재지변, 교통차단,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
제18조(경조휴가) 공단 「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」 제30조(경조휴가)를 준용한다.

제5장 보수

제19조(보수) 청년인턴의 보수는 안성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.

제20조(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)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

② 신규채용, 계약만료자의 보수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근일(연차휴가, 경조휴가, 공가 등의 기간초과 포함)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보수는 청년인턴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.

제6장 기타

- 제21조(성과평가)** ① 청년인턴의 관리부서장 및 소속부서장은 근무기간 동안의 태도, 실적 등을 기초로 하여 기간만료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평정 요소의 적용 및 배점은 업무 능력과 근무 수행 태도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.
- ③ 청년인턴의 평정은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평정하며 채용 부서장이 확인한다.
- ④ 공단은 청년인턴 수료자 및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청년인턴에 대하여 향후 채용 관련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2조(증명서 발급)** 이사장은 인턴기간 근무 완료 후 청년인턴이 퇴직할 때 이사장 명의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년인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1. 12. 29.>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 (제8조 관련)

표준근로계약서

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(이하 “사업주” 라 함)과 (이하 “근로자” 라 함)은(는)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-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※ 다만, 위탁계약의 해지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해 계약은 종료한다.
- 근무장소 :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 및 사업장
※ 근무장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.
- 업무의 내용 :
- 소정근로시간 :1일 8시간, 주 40시간
※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.
※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,1일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을 부여한다.
- 근무일/휴일 : 공단 청년인턴운영내규에 의함.
-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 부여
※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할 수 있다.
(다만, 근로자의 날 5.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유급휴일 부여)
- 임금 : 안성시생활임금 적용
- 연차유급휴가 : 공단 청년인턴운영내규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.
- 사회보험 적용 : 고용보험,산재보험,국민연금,건강보험을 적용함.

9. 근로계약서 교부

-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.

10. 기 타
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공단 청년인턴운영내규,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(사용자) 사업체명 : 안성시시설관리공단

주 소 :

(전 화 :)

대 표 자 : (서명 또는 인)

(근로자) 주 소 :

(전 화 :)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【별지 제2호 서식】 (제11조 관련)

계약해지 통지서			
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③ 주 소			
④ 근무부서			
⑤ 종사업무			
⑥ 계약기간			
⑦ 해지일자			
⑧ 해지사유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(인)</p>			

【별지 제3호 서식】 (제21조 관련)<개정 2021. 12. 29.>

청년인턴 근무평가표

○ 평가대상자

성명		생년월일	
근무부서		근로계약기간	

○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

평가영역	평가지표	평가사항	평가점수			
			탁월	우수	보통	미흡
업무능력 (30점)	업무목표달성도 (10점)	담당 업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계획된 목표만큼 처리하는 정도	10	8	6	4
	완성도 (10점)	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정도	10	8	6	4
	논리표현력 (10점)	업무수행과정에서 자기의도 및 주장 등을 논리적·체계적으로 기술, 표현하는 정도	10	8	6	4
직무수행능력 (45점)	업무이해도 (15점)	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판단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	15	12	9	6
	정보수집·관리 (15점)	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	15	12	9	6
	책임·성실성 (15점)	담당업무를 책임을 갖고 자기주도하에 성실하게 처리하는 정도	15	12	9	6
직무수행태도 (25점)	헌신도 (15점)	조직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소속부서와 소속기관의 정책방향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능력	15	12	9	6
	근무태도(10점)	복무규정과 관련한 제반사항 준수 정도	10	8	6	4
평점(계)			/100점			

평가 의견	종합평가

평정자 직위(직급): 성명: 서명:
 확인자 직위(직급): 성명: 서명:

【별지 제4호 서식】 (제22조 관련)

제 호

청년인턴 수료증

성 명 :
 근무부서 :
 근무기간 :

위 사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청년인턴 사원으로 채용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.

안성시시설관리공단

20 년 월 일

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